

kiri Weekly

2014.1.13 제267호

포커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글로벌 이슈

2012년 전세계 상위 25개 보험회사 현황과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퇴직연금 가입(약 14%)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가입 관련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을 조기에 신설하고,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소 적립비율의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상임금으로 추가된 세수를 기업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연금보험료 합산세제를 분리하고, 개정 근퇴법 시행(2013. 7) 이후 표준형 규약제도와 공동가입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검토배경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2014. 1. 6)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선 먼저 중소기업의 미진한 퇴직연금 가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기대됨.
 - 신생기업의 2년 이내 생존율이 48.4%¹⁾에 불과한 경영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국제외환시장 변화로 인하여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1) 통계청(2014. 1), 『기업생명 행정통계』.

■ 2013년 12월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하여 올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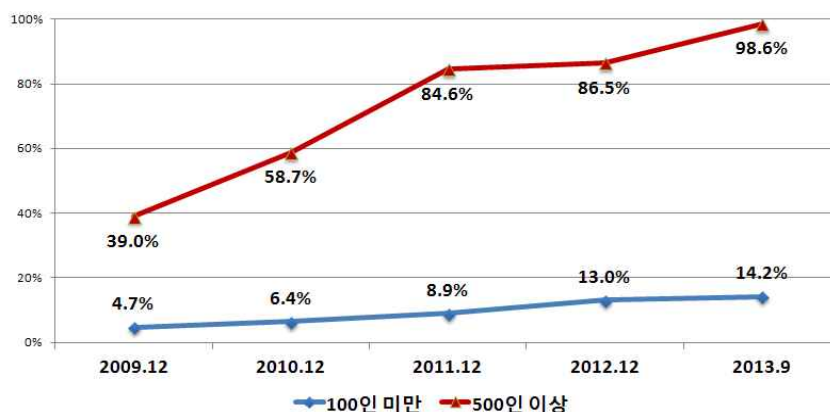
-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은 중소기업의 미진한 퇴직연금 가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경제변화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기존에 사내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한 체불위험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실태

■ 우리나라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정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퇴직연금 가입 규모는 시행 8년여 만(2013년 9월 말 기준)에 적립금과 근로자 가입률이 각각 72.3조 원과 45.6%로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미흡으로 사업장 기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7%에 불과함.
 - 이는 대기업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약 98% 이상)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14.2%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입이 극히 미진하기 때문임.
 -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현황(각 연도).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경에도 3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비활성화 주요 요인

-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의 특징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여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퇴직급여제도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모든 사업장(2011. 12월 이전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강제 퇴직급여제도이지만 OECD 일부 국가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음.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근퇴법(2012. 7. 26) 시행 이후 신설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에 우선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부족한 실정임.
 - 즉, 관련 법규는 신설하였으나 신설 사업장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함.
- 현재 사업장이 종전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부담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장의 자금압박이 심화될 수 있음.
 -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상 적립²⁾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금 적립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하거나 적립수준이 낮을 가능성³⁾이 높아 과거 퇴직급여 채무가 많은 기업일수록 퇴직금 정산에 따른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과거 퇴직급여 채무를 포함하여 확정급여형(DB)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입후 1년 이내 책임준비금의 70%⁴⁾ 이상의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요구됨.

2) 법인세법 제33조 1항.

3) 법인세법시행령60 2항에 따라 2014년부터 사내 퇴직급여충당금의 10%를 손비처리 할 수 있음.

4) 개정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이 2017년까지 80%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 가입제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제안이 미흡한 것에도 원인이 있음.

- 개정 근퇴법(2012. 7)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둘 이상 사업장의 확정기여형제도⁵⁾를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동가입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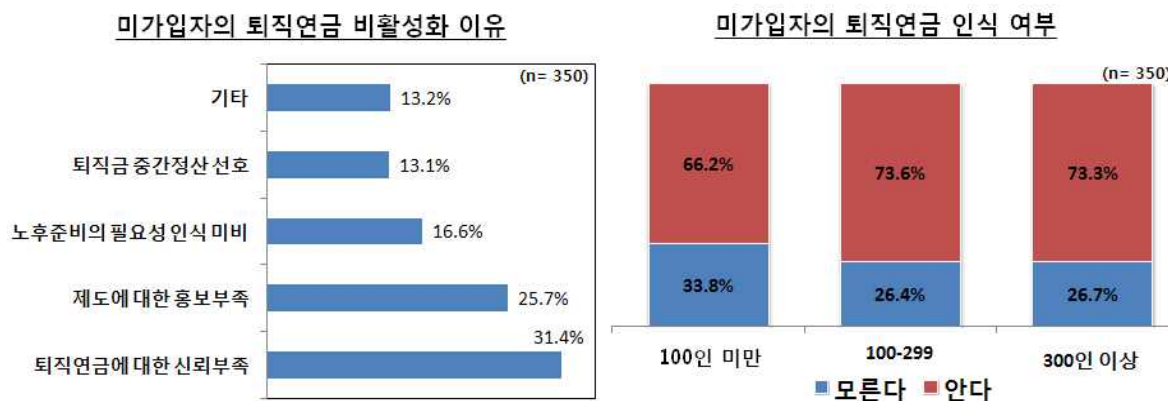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도 원인이 있음.

-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호 수준(5천만 한도)과 범위(DC형)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도산 또는 경영 악화시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보장장치가 부재함.
-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형)의 기여금에 대한 합산소득공제(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개인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점이 많은 퇴직급여제도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퇴직연금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함.

- 퇴직연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제도 홍보 부족(25.7%)이 두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직도 퇴직연금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그림 2〉 퇴직연금 비활성화 및 인지여부 실태조사 결과



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3).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

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사례

■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단일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화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일부(한국, 일본, 이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만을 실시하고 있음.
- 많은 연금 선진국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헝가리 등임.

■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은 저소득 근로자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저소득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NEST제도⁶⁾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기여금의 약 12.5%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
- 일본은 중소·영세기업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급여공제제도를 195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 가입할 경우 기업에게 부담금의 2분의 1을 가입 후 1년간 지원하고 있음.
-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2012년부터 저소득자에게 기여금의 1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기여금의 최저세율(15%) 적용, 60세 이후 연금수령시 비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등은 퇴직연금 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가입 또는 공공 자산관리 형태의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 Plan)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1974년부터 복수사용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6)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국민고용저축신탁).

11.5%(DB형 25.5%, DC형 5.0%)⁷⁾가 활용하고 있음.

- 호주는 1984년 기여금을 공동 관리하는 산업펀드(Industry Fund)를 1984년에 도입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연기금 펀드가 가입되어 퇴직연금기금 운영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본은 1980년대부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연합형⁸⁾, 종합형⁹⁾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활용(DC형 가입기업의 약 60% 이상 가입)하고 있음.
 - 한편, 가입 절차와 관리가 간단한 퇴직연금의 표준적인 규약이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공되어 1980~1990년대 중소기업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음.

마. 정책 및 금융회사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보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99%)¹⁰⁾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보급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전체 가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그러나 향후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압박을 감안할 경우 향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배려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및 중소기업의 인식제고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제도 가입규정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조기에 신설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과거 퇴직급여채무를 포함한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최소적립비율을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차등화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분담하여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가입 근로자의 추가 부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합산 소득공제제도를

7) U.S. Department of Labor(2013, 6),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Historical Tables and Graphs".

8) 자본관계가 있는 관계회사와 공동가입 및 관리방식.

9) 자본관계가 없는 동종 및 이종 기업간 공동가입 및 관리방식.

10)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현황』.

각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약 14%~27%)¹¹⁾와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차원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기업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다섯째, 금융회사는 표준적인 퇴직연금제도인 표준형규약, 사업조합·협회, 국가·지역산업단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컨설팅, 규약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금 체불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강제 가입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당국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음. [kiri](#)

11) 한국노동연구원(200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 5천 5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 12. 18).